취약시기(을지연습) 복무점검 결과보고

-통합 및 복수관리 지사 관리자 근태 점검 병행-

	집 감사기간:	2015.	8.	17.(월)	~ 2015 .	8.	20.(목)	/ 4일 간
--	---------	-------	----	--------	---------------	----	--------	--------

□ 감사인원: 11명

□ 지적사항: 통보 3건

2015. 9.



<u>목 차</u>

I. 감사실시 개요	1
1. 감사목적	1
2. 감사대상	1
3. 감사기간 및 인원	1
4. 감사중점 사항	2
Ⅱ. 감사결과	3
1. 총평	3
2. 주요 실적	4
3. 분야별 지적사항	4
4. 감사자 의견	5
5. 행정사항	6
Ⅲ. 처분요구 현황	7
붙임명세	7
【 붙임 1 】점검대상기관 현황 ···································	8
【붙임 2】 감사결과 처분요구	10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2015년도 을지연습기간 중 비상소집 응소상황 점검과 임직원의 복무점검 등을 통하여 국가 위기관리 대처능력 기여와 공직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2. 감사대상

○ 대상기관: □□, ○○○, △△△ 및 ◎◎지역본부 등 8개 본부와 16개 지사【붙임 1】점검대상 기관 현황 1부.

3. 감사기간 및 인원

- 기 간: 2015. 8. 17.(월) ~ 2015. 8. 20.(목) 4일간
- 인 원: 9개 반 11명
 - 8. 17. 9개 반 11명이 을지연습 응소현황 등 점검(감사1반: 8. 17.~ 8. 20.)
 - 8. 18. ~ 8. 20. 3개 반 3인이 복무점검 실시(11명 중 3명)

감사반	감사인		감사인 점검기관		감사기관	비고
9개 반	11명		11명		27개 기관	
1반	감사� 팀 팀	부장 ●●● 장 ◇◇◇ 장 ◇◇◇	□ □ (전 부서)	1	1	
2반	차	장 ◆◆◆	□□□□□ (◎◎지사, ◎◎지사)■ (◎◎◎◎◎지사, ▲▲지사)□□□□□ (본부, □□□□□지사)	4	6	감찰 병행
3반	차	장 ◎◎◎	□□□□□□지역본부	1	1	
4반	차	장 ●●●	☑☑지역본부	1	1	
5반	차	장 ◐◐◐	△△△△△△, ◎◎지역본부	1	2	

감사반	감사인		감사인 점검기관		감사기관	비고
6반	팀	장 🕦	☑☑☑☑지역본부	1	1	
7반	팀	장 ⊖⊖⊖	□ (본부, ▲▲지사, ▲▲지사)■ (본부, □□, ●○●●지사)	4	7	
8반	팀	장 ӨӨӨ	○○○○○○○ ▲ ▲ (①①①①지사, ②②②지사, ●◎②지사, ��지사) ☑☑☑☑ (ⓒⓒ지사)	4	6	
9반	팀	장 •••	жж 지역본부	1	1	

4. 감사중점 사항

이번 감사는 "취약시기(을지연습) 복무점검 및 취약분야 기획점검" 을 실시하였으며 다음 사항을 집중 점검함

○ 2015년도 을지연습 기간 중 이행 상황 점검 및 직무감찰

- 응소 순위별 비상소집 응소 현황 점검
- 상황실의 단계별 연습 진행 상황 점검
- 상황실 메시지 전달 및 회신 후 조치 상황 점검
- 민방위 대피훈련 동참여부 점검
- 비상연락망 체계 작성·비치 및 현실화 여부 점검
- 연습기간 중 근무지 무단 이석 및 이탈 등

O 중점점검 사항

- 통합지사 및 복수관리 지사 관리자 근태 점검

O 기타 사항

- 출·퇴근 시간 준수, 외출, 휴가 등 연습기간 중 기본 복무 점검
- 근무시간 내·외 음주운전 및 도박, 사행성 행위
- 근태리더기 운영 및 최종퇴실점검부 작성관리 적정성 여부
- 도서류 관리 및 정보 보완 준수 등

Ⅱ. 감사결과

1. 총평

□ 을지연습

O 본사)

관련 직원의 임무 수행에 대한 사전 교육이 미흡하여 연습 초기 각각의 분야별 임무를 파악하지 못하여 혼선이 있었으며

O 지역본부)

지역본부는 연습기간 중 연습 첫날 시간 내 응소는 양호하였으며 19일 민방공훈련 시 지하대피소에서 민방공 훈련 방송을 청취하는 등 적극적으로 동참하였으나 본사의 시달 미션에 대한 응소 이외에 본부 자체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았음

O 지사)

연습 첫날 시간 내 응소는 잘 하였으나 19일 민방공훈련 참여는 서무 업무 직원과 지사장이 내근 중이었으며 민방공 훈련에 따른 대피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음

■ 통합・복수관리지사 관리자 근태 점검

○ 통합¹⁾·복수관리지사²⁾ 관리자의 근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양호하게 근무하고 있었으며 일부 지사장은 인력 부족으로 GNSS측량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등 성실히 복무하고 있음

¹⁾ 통합지사: 2개 지사를 1개 지사로 통합하여 1명의 지사장이 운영하는 기관

²⁾ 복수관리지사: 2개 지사를 1명의 지사장이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통합지사와 유사하나 지사 단위가 2개 지사로서 통합지사와 구분됨

2. 주요 실적

지적사항	종류	건수	비고
2015 을지연습 비상소집연습 지연 응소	확인서	1건	
2015 을지연습 비상소집연습 지연 응소	확인서	1건	0000000
측량용품 관리 소홀	확인서	1건	□□□□□□□지역본부 □□□□□□지역
총 계		3건	

^{*} 그밖에 경미한 위규 사항은 정부정책 및 공사의 방침 설명 등 현지 구두 조치

3. 분야별 지적사항

- ○○○○실(본사)에서는 을지연습과 관련하여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발령 후 1시간이내 응소하고, 일반직원은 비상소집 발령 후 2시간 이내 응소하도록 시달하였음³⁾
- 따라서 직원들은 을지연습에 참가하면서 근면성실한 자세로 임하고 비상소집 명령이 지시되었을 경우에 필수요원은 1시간 이내에 응소하고, 일반요원은 2시간 이내에 응소하여 응소표에 등록하여야 함
- 그런데 △△△△△△△의 직원 2명과 ○○○○○○의 직원 1명은 일반요원으로 2015. 8. 17. 오전 6시에 을지연습 비상소집이 발령된 이후 교통지체 상황 등의 사유로 을지연습 응소시각에 각각 5분 ~ 10분 지연하여 응소함

^{3) &}quot;2015년 을지연습대비 비상소집 응소자 현황 사전조사" ○○○○실-6838(2015. 7. 30.)와 "2015 을지연습 비상소집 발령 시 필수요원 조치사항 알림" ○○○○실-7131(2015. 8. 7.)

- 「재무규정」제40조(자산관리의무) 제1항에는 "공사의 모든 자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공사의 수익증대와 이익 보존에 대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 「자산관리규칙」제5조(관리책임자) 제3항에 "측량장비·전산장비와 저장품의 분임취급자는 본사와 지역본부는 각 담당부서장, ○○원은 ○○○○실장, 지사는 지사장으로 하고 취급원은 분임취급자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고 되어 있고.
- 「같은 규칙」제17조(관리 사용책임) 제2항에 "분임 취급자는 소관 물품의 출납·보관 등의 사무 처리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음
- 그러나 일부 지사에서 공사 예산으로 구입하여 배부한 경계점표지 등의 측량용품을 지사 사옥 외부 계단 밑 창고에 보관하면서 별도 잠금 조치 없이 방치하였고, 이에 따라 경계점표지 등의 측량용품이 분실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음

4. 감사자 의견

- 이번 복무점검은 을지연습 기간 중에 직원들의 연습 참여정도와 복무 상태 점검에 중점을 두었으며 점검결과 을지연습은 추후 본사와 지역본부, 지사별로 체계적이며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부터는 좀 더 내실 있는 연습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번에 16개 지사를 점검하였으며 그중에 통합지사 총10개 지사 중 3개 지사, 복수관리지사 4개 지사 중 3개 지사를 점검하였고

그 외 지사는 예방 감사차원으로 추후 지속적인 점검을 할 예정이며

○ 관련지사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의견 청취 등)으로 제도적 미비점 (여비규정, 복무규칙 등)이나 부적합한 근무실태 발견 시에 관련제도 개선 및 직원에 대해서는 처분 요구하고자 함

5. 행정사항

- (감사결과 공시) 공공감사정보시스템, e-감사시스템, 홈페이지 공시

Ⅲ. 처분요구 현황

관 계 기 관	내 용	처	분요구 등	중류	비고
	내 용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 <u>J.1/</u>
2015 을지연습 ○○○○○○○ 비상소집연습 지연 응소		통보			
	2015 을지연습 비상소집연습 지연 응소	통보			
□□□□□□지역본부	측량용품 관리 소홀	통보			

붙임명세

붙임 1. 점검대상 기관 현황 1부.

붙임 2. 감사결과 처분요구 2부.

【붙임 1】 점검대상기관 현황

○ 기간: 2015. 8. 17. ~ 2015. 8. 20.(4일간)

01 71	점검 기	기관	7) (i)	점검 시	ઝ ોડો ઘો	nj =
일자	□□, ○○○, △△△ 및 본부	지사	정원	인원	감사 반	비고
계	11개	15개	918	703	9개 반	
			269	231	1반	
			33	33	8반	
			56	50	5반	을지연습 응소점검
	0 0		29	26	5반	
	* *		62	59	9반	
	σ σο 	9999	36	3	8반	
8.17.(월)			34	33	7반	을지연습 응소점검
		$lackbox{}{}$	19	_	7반	감찰
			34	34	4반	
			36	35	3반	을지연습 응소점검
			39	39	2반	
			9	8	2반	
			45	41	6반	을지연습 응소점검
	<u>A</u>	• • •	10	8	8반	
		000	8	_	8반	감찰
8.18.(화)		A A	9	6	7반	
			10	3	2반	감찰병행
			8	_	7반	감찰

راد (م) عا	점검 기관						정원	점검 시	감사 반	비고																		
일자	□□, ○○○, △△△ 및 본부			□□, ○○○, △△△ 및 본부		□□, ○○○, △△△ 및 본부		□□, ○○○, △△△ 및 본부		□□, ○○○, △△△ 및 본부		□□, ○○○, △△△ 및 본부		□□, ○○○, △△△ 및 본부		□□, ○○○, △△△ 및 본부		□□, ○○○, △△△ 및 본부		□□, ○○○, △△△ 및 본부		□□, ○○○, △△△ 및 본부		l사	~8편	인원	검사 반	H1-12-
	\mathfrak{R}			¥	₩	⇔	39	33	8반	민방위훈련 점검																		
							29	16	7반	민방위훈련																		
0.10 (소)		 					19	13	7반	점검																		
8.19.(수)					A	A	10	5	2반	민방위훈련 점검																		
							12	5	2반																			
					Б		15	8	7반																			
							12	11	2반																			
8.20.(목)					00	000	17	_	7반	감찰																		
					6)	6)	19	3	8반																			

【붙임 2】 감사결과 처분요구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통보

제 목 2015 을지연습 비상소집훈련 지연 응소

관계 기관 ○○○○○○, △△△△△△

내 용

○○○○○○○ 本 △△△△△△△△△△△ 에서는 ○○○○실(본사)의 '2015 을지연습¹⁾ 유의사항'에 따라 2015. 8. 17. 오전 6시에 직원 비상소집을 발령하고 응소시간 내 응소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을지연습 비상훈련을 실시하였다.

「복무규정」제2조에 따르면 직원은 업무운영상 기본이 되는 관련 규정을 지켜야 하고 근면성실한 근무자세로 맡은 바 직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실(본사)에서는 위 연습과 관련하여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발령 후 1시간이내 응소하고, 일반직원은 비상소집 발령 후 2시간이내 응소하도록 시달하였다.2)

따라서 위 △△△의 직원들은 을지연습에 참가하면서 근면성실한 자세로 임하고 비상소집 명령이 지시되었을 경우에 필수요원은 1시간

^{1) 2015. 8. 17.}부터 같은 해 8. 20.까지 4일간 실시함

^{2) &}quot;2015년 을지연습대비 비상소집 응소자 현황 사전조사" ○○○○실-6838(2015. 7. 30.)와 "2015 을지연습 비상 소집 발령 시 필수요원 조치사항 알림" ○○○○실-7131(2015. 8. 7.)

이내에 응소하고, 일반요원은 2시간 이내에 응소하여 응소표에 등록하여야 했다.

[표] "2015 을지연습" <u>미응소자 현황</u>

소속	직 · 성명	응소구분	응소시각	실제 응소시각	사 유
0000000	국토정보직5급 융융융	일반요원	08:00	08:10	교통체증
	00000 ***	일반요원	08:00	08:05	교통지체
	♦♦♦♦♦ □□□	일반요원	08:00	08:10	교통체증

그런데 [표]와 같이 위 직원 3명은 일반요원으로 2015. 8. 17. 오전 6시에 을지연습 비상소집이 발령된 이후 교통지체 상황 등의 사유로 을지연습 응소시각에 ○○○○○○○ ★★★★실 戀戀戀는 10분, △△△△△ △△ 실 ◎◎◎◎◎ ❖❖❖은 5분, ○○○○○○실 ◆◆◆◆◆ □□□은 10분을 각각 지연하여 응소하였다.

그 결과 위 3명은 유사시 위기대응태세를 확립하고 국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을지연습의 연습 목적을 상실하게 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과 △△△△△△△△◇장은 앞으로 을지연습 등 비상소집 연습에 지연 응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통 보

제 목 측량용품 관리 소홀

관계 기관 □□□□□지역본부 □□지사

내 용

「재무규정」제40조(자산관리의무) 제1항에는 "공사의 모든 자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공사의 수익증대와 이익 보존에 대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자산관리규칙」제5조(관리책임자) 제3항에 "측량장비·전산장비와 저장품의 분임취급자는 본사와 지역본부는 각 담당부서장, 교육원은 인재 개발실장, 연구원은 기술연구실장, 지사는 지사장으로 하고 취급원은 분임취급자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칙」제17조(관리 사용책임) 제2항에 "분임 취급자는 소관 물품의 출납·보관 등의사무처리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공사 예산으로 구입한 측량용품 등의 각종 자산은 그 재고를 정확 히 파악하여야 하며, 분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측량용품 관리 현황]

측량용품	수량	보관장소	보관상태	비고
경계점표지	30~40여 박스	현관 계단 밑 창고	잠금 조치 없이	
보조점 및 경계점	10여 박스	연선 계단 끝 정보	방치	

그러나 위 현황과 같이 공사 예산으로 구입하여 배부한 경계점표지 등의 측량용품을 지사 사옥 외부 계단 밑 창고에 보관하면서 별도 잠금 조치 없이 방치하였고, 이에 따라 경계점표지 등의 측량용품이 분실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때 지역본부장은 경계점표지 등을 보관하고 있는 ™ 지사 창고에 대해 잠금장치를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측량용품 등의 공사 자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